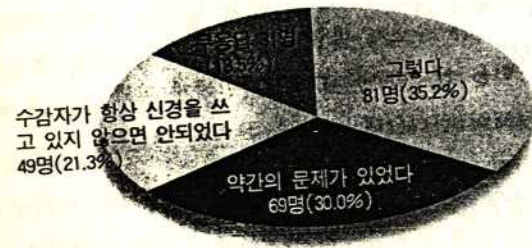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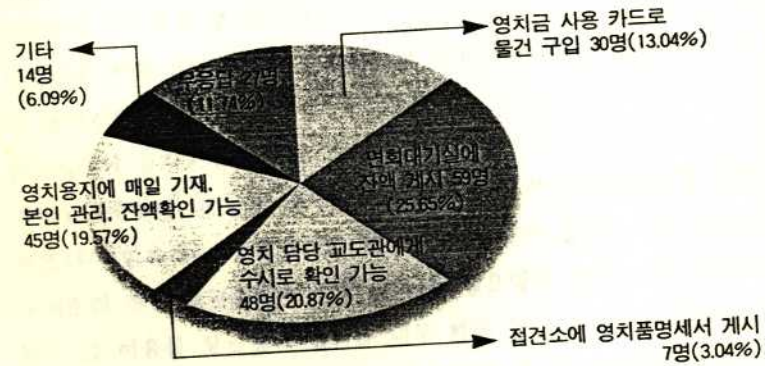


제17장 금품의 취급

1. 영치금은 수감자가 한 점의 의심을 품을 필요가 없는 분명한 방법으로 관리되었습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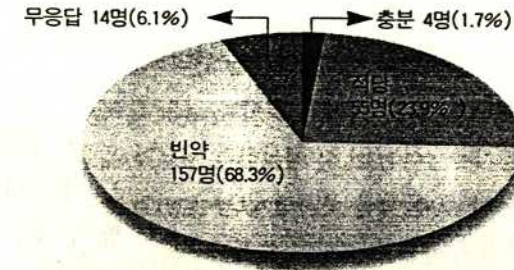
2.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은 어떠하였습니까?(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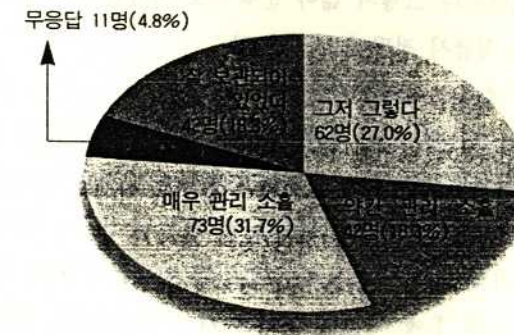
▶ 기타—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확인한다(5명)/1~2주에 한 번씩 잔액표를 열람한다(4명)/영치금을 사용할 때만 확인 가능(3명)/사용내역과 잔액 확인이 불가능하다(5명)/가끔 잔액 확인 가능하며 영치 영수증을 받는다(2명)/구매시 잔액을 확인한다(2명)/금액 용지만 받는다(영치금이 들어올 때)(2명)/영치금이 왔을 때만 확인한다(2명)/방장이 관리하여 본인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(1명)/청소(소지)가 구매용

지를 작성한다(1명)/구매 후에 영치금 잔액 통보한다(1명)/배식반장이 모두 관리한다(1명)/가계부를 직접 썼다. 안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(1명)/각 사동에 잔액을 게시한다(1명)/영치금 사용 불허(육군 교도소)(1명)/공장 관구실에 영치금 잔액을 확인한다(1명)/컴퓨터로 확인한다(1명)/물건 구매용지 쓰고 잔액만 복도에서 확인한다(1명)

3. 영치금으로 구입 가능한 구매품목의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4. 당신이 출소할 때 돌려받은 보관물은 잘 보관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5. 교도(구치)소 당국의 금품 취급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?

■ 영치금의 투명성 보장과 개선제도가 필요하다(23명)

영치금 사용 내역의 통보와 상시적 공개가 필요하다/영치금 사용 내역을 1주일에 1번 정도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/영치금을 수시 확인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영치금 현황을 알 수 있어야 한다/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유치해서 재소자의 입출금 내역을 항상 확인할 수 없고 교도관에게 묻기도 어려운 분위기다/컴퓨터로 기록하고 본인의 번호만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그러면 편리하면서도 충분한 확인이 될 것이고 종이의 손실도 적어질 것이다/영치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못하다/주로 사람들이 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영치금 사용 내역이 틀릴 때도 있는데 그때 확인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/면회시에 영치금을 확인하므로 본인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/개인이 영치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/일일변동 내역서를 매일 공개해야 한다/바깥에 접견을 오면 재소자들의 영치금 액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/보관금을 출소 당일에도 일찍 계산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밖으로 나가면서 대충 계산하게 되었다/영치금 입금시 전달이 너무 늦다

■ 영치품 관리의 소홀과 분실(17명)

지갑의 현금이 3만 원 정도 없어졌다/옷과 책을 분실했다. 곰팡이가 많이 생겼다/영치품 보관장소가 좁고 불결하다/수시로 영치품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어야 한다/옷과 책에서 냄새가 독해서 버렸다/환기와 소독이 필요하다/출소시 영치품이 썩어 있었다/긴 세월 동안 보관한 후에 사용이 어려운 것이 많다/지갑, 현대같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나쁜 것과 교체되어 영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

■ 구매 품목의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(5명)

재소자들의 구매를 너무 임의대로 관에서 하는 것 같다/신발문제는 1만 원 정도 하는데 금방 떨어진다/약간 비싸더라도 오래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다/다른 구매품을 살 게 없다/의약품 구매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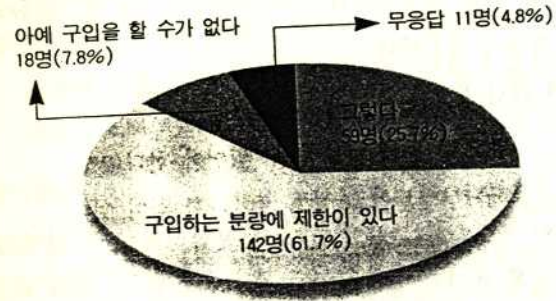
■ 영치금 이자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(5명)

■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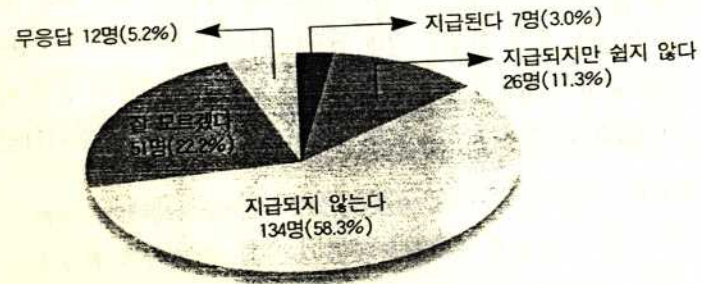
없다(3명)/수감자가 밖으로 돈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(2명)/외국인을 위한 환전이 필요하다(1명)/어느 정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/98년 2월 영치금 관리를 이자가 있는 금융기관에 저축할 수 있게 하였으나 그것도 일정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/모든 영치금은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(1명)/교묘한 사람에 의한 착복 가능성이 있다(1명)/항상 신경을 쓰게 된다(1명)/조직폭력배와 교도관이 결탁하여 노름을 하도록 조장하며 재소자 영치금과 물품을 결국 빼앗아간다(1명)/만기출소시에는 옷을 세탁하여 돌려주었으면 한다(1명)

제18장 집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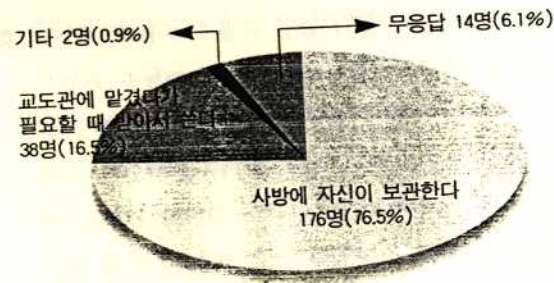
1. 필기 도구와 공책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?



2. 영치금이 없는 사람에게 집필 도구가 지급됩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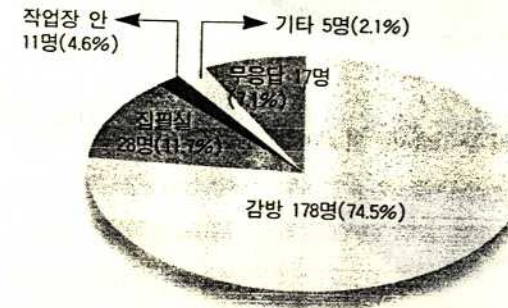


3. 집필 도구는 어떻게 소지합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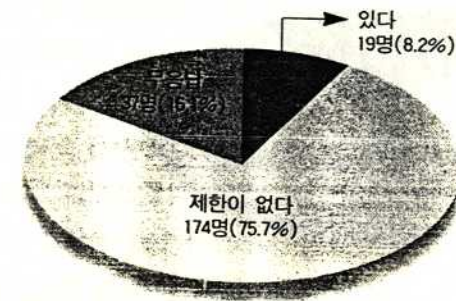
■ 기타—방장을 통해 관리(1명)/집필도구가 없었다(1명)/방 안에 비치되어 있지만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(1명)/허락 받고 갖고 있다가 가끔 점검 받음(1명)

4. 집필은 어디서 합니까?(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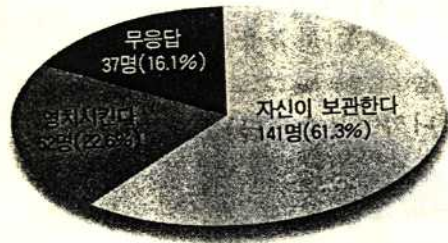
■ 기타—집필허가자를 따로 한 방에 기거시킬 때 방에 보관하고 방에서 집필(2명)/아무곳에서나(1명)/병실(1명)

5. 집필 시간의 제한은 있는가?



■ 몇 분—20분(4명)/60분(4명)/30분(3명)/10분(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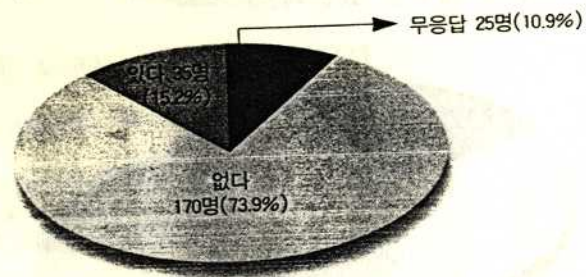
6. 집필한 노트는 어떻게 보관됩니까?



7. 노트나 편지를 원하는 때에 외부에 반출할 수 있습니까?



8. 자신이 썼던 노트를 출소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?



9. 그밖에 집필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?

- 출소시 개인 집필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(26명)

-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(17명)

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야 하나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할까 봐 집필을 제대로 허가하지 않는다/90년대 전까지는 가족에게 편지를 쓸 때를 제외하고는 집필을 불허했다/집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므로 타인의 노트를 쓰지 못한다/노트를 검열한다/머리와 가슴을 난도질당한 느낌이 다/95년 이전만 해도 개인 집필은 거의 불가능하였다/집필 허가에 대해 환영하며 보다 자유롭게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쉽다

- 집필엔 별 문제가 없다(6명)

- 집필 시간·공간의 제약(5명)

자기 방 안에서 집필이 허용되어야 한다/24시간 집필을 허가해야 한다/모든 것이 통제되며 집필 역시 공간 인원이 해결되어야 자유로운 집필이 가능하다/집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

- 집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(5명)

인권 차원에서 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/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/집필이 전혀 허락되어지지 않는다/당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

- 집필용구를 제한한다(5명)

장수를 제한한다/구입은 되나 개인 소지 노트의 한계를 두어 다 쓴 후에 교환해야만 한다

- 검방시 개인 노트를 압수한다(4명)

글 써놓은 거라든가 신문에 나오는 스크랩물 등 조금이나마 모아 두거나 하면 검방을 통해 폐기하고 있다/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글이나 지식들을 그렇게 없애서 말썽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말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/교도소에서 느낀 점 등을 적은 집필 내용과 가족에게 쓰거나 못 부친 편지 등과 향소준비를 위한 메모 등을 모두 출소시에 빼앗겼다. 아니 말도 없이 가져가서 주지 않았다/내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검방 와서 내용이 이상하면 그 부분을 찢어간다

■ 기타

언론탄압이다(1명)/집필 허가를 위하여 교무과에 가려 했지만 보내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(1명)/빨강·파랑색의 볼펜도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(1명)

제19장 이감·전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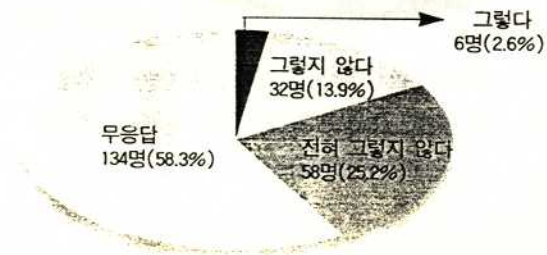
1. 항소, 형 확정 외에 이감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?



2. 이감을 가본 경험이 있다면, 당신의 이감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?

■ 형 확정으로 이감(7명)/교도소 교도관들과의 마찰로(6명)/항소(4명)/누범 교도소로 이감(4명)/초범(3명)/사건 재조사(2명)/분류심사로(2명)/당국의 필요로(1명)/사건이첩으로(본청 단독에서 송부 합의부로)(1명)/수용공간의 부족(1명)/추가형을 받은 후, 병치료 후(1명)/전향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(1명)/시국사범 정원 초과로 분리수용(1명)/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(1명)/검찰소환/감호 때문에(1명)/여자교도소로 이감(1명)/수원교도소가 과실범 수용소로 바뀜(1명)/직업훈련소에 자격증 획득을 위해(1명)/이유 모름(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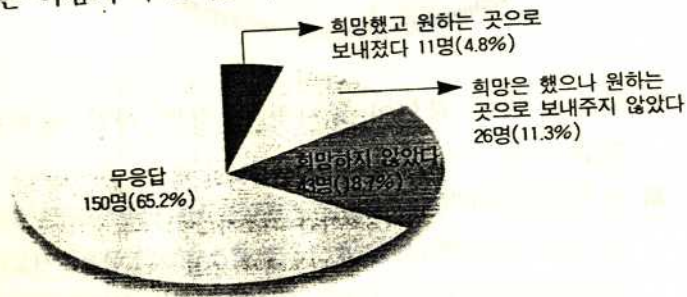
3. 이감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습니까?



4. 이감에 보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?



5. 당신은 이감시 주소지로의 이감을 희망했습니까?



6. 항소, 형 확정 외에 전방의 경험이 있습니까?



7. 전방을 가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?

- 교도소 자체의 행정적인 문제(17명)
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/규정에 의한 자리 재배치가 있다. 계획 상 한 방에 오랜 기간에 기거시키지 않는다/교도소 신축과 관련해 전방시킨다/사형이 확정되면 2월에 한번씩 전방, 형 확정 이후에는 수 없는 전방/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재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/신입 재소자의 발생으로/사동의 신축으로
- 개인적인 요구, 상황으로 인하여(14명)
사고에 의한 팔 골절로 5동상에서 병동으로/일반사동에서 종교사동으로 신청하면 옮겨 주었다
- 특정인들과의 분리(8명)
공안탄압의 일부이다/본인이 출소한 후 방이 깨져 흩어졌는데 이유는 보복성과 사람들 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/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/정치범끼리 서로 격리시키기 위한 강제 전방조치였다
- 생활 처우개선 등의 이유(4명)
좀더 깨끗한 방으로 이동/혼거방이 비좁아서/방의 여건이 좋지 않아 옮김/감방에 물이 스며서 생활이 불가능
- 기타
징벌 이후에(7명)/독거방 이동(6명)/형의 확정으로(6명)/이유를 모른다(5명)/소내 소란 등의 이유(4명)/보복성 이감(교도관에게 찍혀서)(3명)/동료와의 싸움으로(2명)/조사 후 전방되었다(1명)/본인 요구와 무관하다(1명)/특수동 수감(1명)/감호소로 이감되었다(1명)/종교방 입방(1명)/교도관의 부족으로(1명)/정치적인 이유로 격리(1명)/겨울철 동상으로 독거수용 불가능하다(1명)

8. 보복 이감이나 전방의 경우를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?
아래 자세한 사항을 적어주십시오.

■ 교도(구치)소 및 이유

- 광주 교도소(7명)—소내 민주화투쟁에 대한 보복성(2명)/교도관과의 불화(2명)/교도행정 개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/한총련 의장에 대한 소위 사태 가능성을 빙자한 이감/정치적으로 불순한 언동을 한다고 이감
- 대구 교도소(3명)—98년 4월경 취사장 반장 무능력으로 청송 이감/소내 민주화투쟁/교도관과의 마찰
- 대전 교도소(3명)—주임과 심하게 다툰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대구 교도소로 이감/징벌
- 서울 구치소(3명)—1층에 공안수가 너무 많다고/감방 내의 갈등/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
- 영등포 구치소(3명)—금품거래로(폭력범들끼리 친분있는 교도관 부탁)/형벌로 전방 당해서 우리 방으로 온 친구가 있었다
- 전주 교도소(3명)—단식투쟁 주도/교도소 행정에서 나타나는 비리를 가지고/전향 공작 일환
- 군산 교도소(2명)—소내의 수용능력상의 문제로 인해/작업거부와 정신교육으로 인한 성격불량
- 안양 교도소(2명)—징벌 후/학생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
- 강릉 교도소(1)—징벌 이후 계속 징벌로
- 공주 교도소(1)
- 목포 교도소(1)—단식투쟁 등으로 소측과 대립
- 부산 교도소(1)—싸워서
- 순천 교도소(1)—소내 싸움에 대한 보복 차원
- 원주 교도소(1명)—반장이 희생타로 이감 가는 것을 보았다

- 영등포교도소(1명)—교도관의 지시불이행
- 인천 교도소(1명)—혼거방에서 교도관에게 반항해서 독방으로 전방되었다.
- 천안 소년 교도소(1명)—소란행위
- 청송 감호소 교도소(1명)—교도관과의 마찰
- 청주 여자 교도소(1명)—집필제도에 대한 청원
- 춘천 교도소(1명)

9. 그밖에 이감, 전방에 관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?

- 거주지 내 이감이 가능해야 한다(11명)
홀어머니나 홀아버지의 고령화로 인해 면회 오시기가 힘들어 집 가까운 곳으로 가길 희망하는 재소자가 간혹 있지만 교도당국에서는 절대로 보내주질 않는다/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이감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
- 잦은 이감과 전방 반대(9명)
소에선 이감, 전방을 대단히 꺼려 한다/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/잦은 전방에 원칙이 없는 듯하다
- 이감, 전방시 재소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(7명)
- 기타
엄격한 관리, 공정성이 필요하다(보복성 전방 불허)(3명)/사전에 통보해야 한다(1명)/전방은 폭력을 방기하는 보복적 형태로 이루어진다(1명)/적성에 맞는 작업장 전방(1명)/죄목, 전과기록에 따른 분류 필요(1명)/전방에 대해서는 특수한 재소자가 힘을 발휘하여 되는 경우가 있음(1명)/직원이 보다 크고 깨끗한 방을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 주도록 해야 한다(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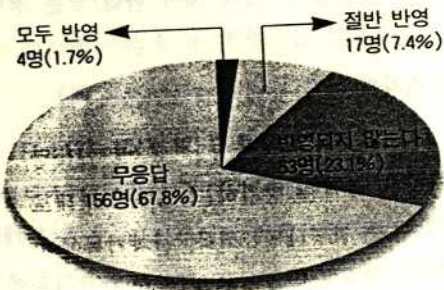
제20장 작업 및 작업상여금

1. 당신은 작업을 하였습니다. 하셨다면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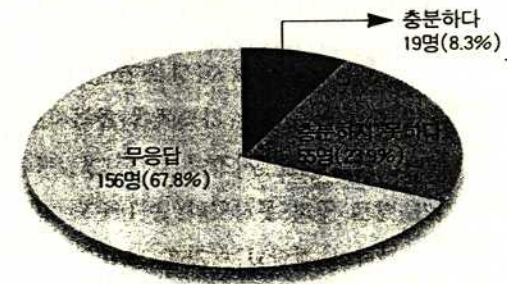


■ 작업의 종류—양재(8명)/축구공 꿰매기(6명)/종이봉투 제작(5명)/목공(3명)/이용(3명)/조화(3명)/청소(3명)/인쇄(3명)/수작업(2명)/영선(2명)/외부 통근(2명)/조화(2명)/철공(2명)/제본(1명)/박스공장(1명)/경운(1명)/농사일(1명)/자동차정비교육(1명)/조타공장(1명)/악대(1명)/위생장갑(1명)/가방공장(1명)/인쇄(1명)/편(1명)/조구(1명)/엑세서리(1명)/바구니(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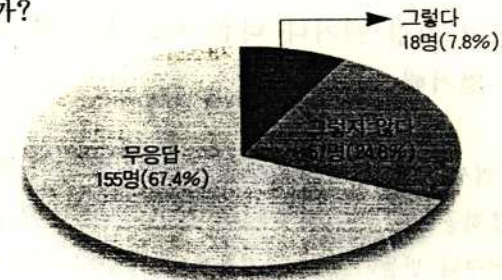
2. 작업 분류시 자신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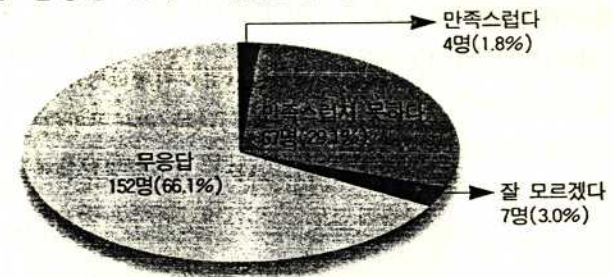
3.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전시설 등의 조치가 충분했습니까?



4. 작업교육은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충분히 실시되었습니까?



5. 작업 환경은 만족스러웠습니까?



6. 산재 발생시 교도소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?

- 사고 발생을 축소, 왜곡한다(8명)/본 기억이 없어 모른다(5명)/충분한 산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(4명)/산재 발생을 숨긴다(2명)/의무과 치료 입원(2명)/치료와 위로금을 주지만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위로금도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많다(1명)/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했다. 뒤처리가 별로 좋지 못하였다(1명)/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손가락이 절단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, 듣기로는 몇십만 원 크기는 몇백 정도라고 들었다(1명)/대책이 없다(1명)/ 응급조치(1명)/별로 신경쓰지 않는다(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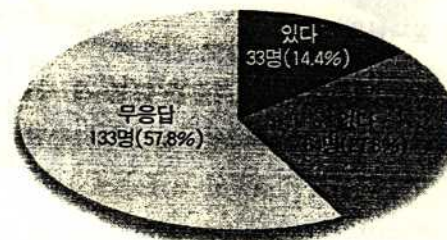
7. 수용시설에서 직접 했거나 다른 재소자가 한 작업의 종류를 모두 열거해 주십시오.

- 양재(19명)/취사(15명)/청소(15명)/목공(12명)/플 뽑기(원예)(11명)/인쇄(9명)/조화공장(9명)/영선(6명)/공공장(축구공)(6명)/철공(4명)/봉투(4명)/바구니 만들기(4명)/편지봉투 제작(4명)/외청(4명)/이발(3명)/공장(3명)/대청(3명)/환미(3명)/편 작업(3명)/세탁(3명)/전자(2명)/두부공장(2명)/가방(2명)/도장(2명)/배선(2명)/악대(2명)/된장(2명)/뉘시바늘(2명)/자동차 정비(2명)/도자기 무늬 붙이기(1명)/플라스틱(1명)/가구(1명)/배식(1명)/훈련생(1명)/위생(1명)/붓글씨(1명)/죽세(1명)/차입품 운반(1명)/런닝 팬티(1명)/카드공장(1명)/교육(1명)/발일(1명)/전기공사 시험(1명)/안테나 작업(1명)/철제문 제작(1명)/경교대원 소각장(1명)/페인트 작업(1명)/위탁공장(1명)/지사공(1명)/조립(1명)/종이가방 공장(1명)/벽돌작업(1명)/컴퓨터(1명)/코딩(1명)/가발(1명)/앨범공장(1명)/장난감공장(1명)/줄 연결(1명)/폴질하는 작업(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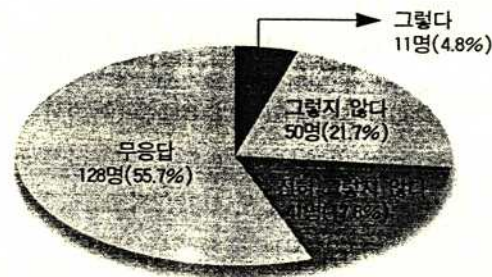
8. 작업시간은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?

- 평일—8시간(35명)/7시간(9명)/6시간(8명)/8~10시간(4명)/5시간(2명)/6~8시간(2명)/7~8시간(2명)
- 토요일—4시간(32명)/3~5시간(8명)/3시간(6명)/3~4시간(6명)//1~2시간(4명)/오전만(1명)/근로 없음(1명)
- 기타—자신들이 필요할 때 강제로 야간작업도 시킴(1명)/평일에 4~9시간(1명)

9. 각종 직업훈련이 재범 방지를 위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10. 수용시설에서 배운 기술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11. 재소자들이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 모두 열거해 주십시오.

■ 사회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다(11명)

■ 기타

컴퓨터(11명)/운전(7명)/검정고시 등 학사 관련 시험(5명)/정비(4명)/외국어 교육(3명)/요리사(2명)/전기(2명)/중장비(2명)/재소자들의 소질과 취미에 따른 교육(재소자의 희망에 따른 작업종류와 교육은 없다)(2명)/재소자의 교육정도, 적성에 따라 심리적인 교육을 해야한다(2명)/미용(1명)/목공(1명)/봉제(1명)/조리(1명)/인쇄(1명)/열관리(1명)/민족교육(1명)/선반(1명)/텔레비전 조립(1명)/인테리어(1명)/정보통신에 관한 것(1명)/특별히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고 싶다(1명)/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워보고 싶음(1명)/공안사범 제외(1명)/실력도 없는 자격증은 없는 게 나을 것 같다(1명)/농업(1명)/말해도 시정되지 않음(1명)/실질적인 방법으로 개방교육 요망(1명)/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(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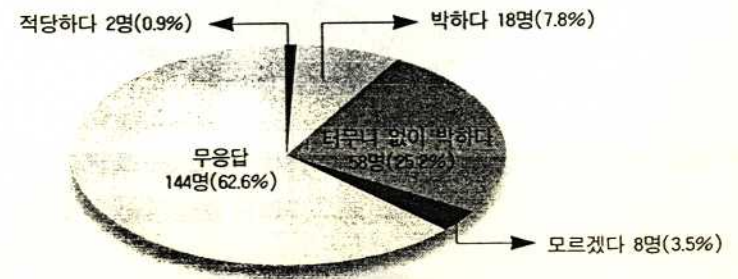
12. 당신은 출소 직전 몇 급수였으며, 작업 상여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?

■ 급수 및 작업상여금 액수

1급(가급)—3천3백원(2명)/5만원(1명)/4천원(1명)/8만원(1명)/3천원(1명)/80원(1명)/6만원(1명)/1만원(1명)/15만원(1명)/1만8천원(1명)/3천4백원(1명)
2급(나급)—3만원(3명)/40만원(2명)/59만원(1명)/2백80원(1명)/1만5천원(1명)/1십만7천5백원(1명)/5만5천원(1명)/50만원(1명)/13만원(1명)/60만원(1명)/2만8천원(1명)/3만7천원(1명)/1만9천5백원(1명)/1만6천4백

원(1명)/4만원(1명)/7만원(1명)/2만원(1명)
3급(다급)—7천원(1명)/2만7천4백50원(1명)/7백원 미만(1명)/8만2천3백50원(1명)/7만5천원(1명)/1만1천원(1명)/8천원(1명)/2천4백원(1명)
4급(라급)—모름(1명)/1만3천원(1명)/1천원(1명)/3만원(1명)/2백57원(1명)

13. 작업상여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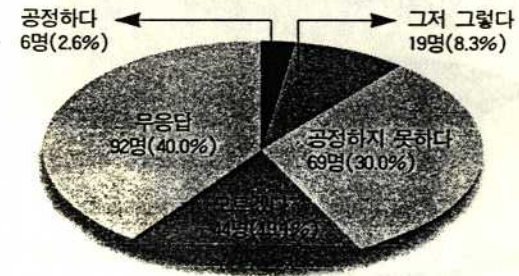
14. 그밖에 작업에 관하여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은?

- 열악한 환경에 비해 상여금이 너무나 작다(7명)
- 공안사범은 작업이 없거나 제약이 심하다(5명)
-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 종류시설이 필요하다(5명)
-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작업을 허가해야 한다(1급수에게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)(4명)
-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(3명)
- 기타—작업시간 등 혹사당한다(2명)/상여금으로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(1명)/일을 익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전문기술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. 또한 정보제공이 별로 없다(1명)/능률을 위해 작업시설 개선이 필요하다(1명)/외부공장에서 많이 써 주었으면 한다(1명)/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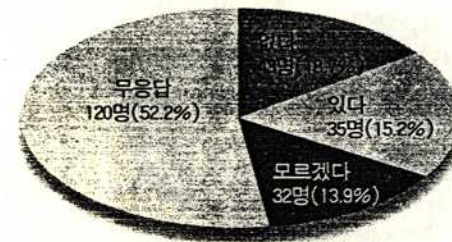
하루 500~600원인데 교회나 의무과 및 접견 등에 간다면 모두 뺀다고 한다(1명)/ 전업이 무척 어렵다. 개인의 소질을 연구해서 전업이 쉽도록 해야 한다(1명)/20대 초·중반의 조직폭력배 출신들의 감시 감독 속에서 작업을 한다. 그리고 폭행과 폭언이 심하며 이러한 일들은 교정당국의 비호와 이용가치 속에서 이루어진다(1명)/기술작업이면 모두 좋다(1명)

제21장 분류누진처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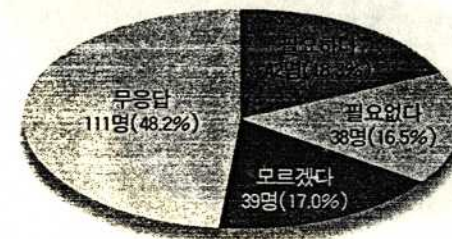
1. 급수분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2. 누진처우 승급을 위하여 교도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춘 일이 있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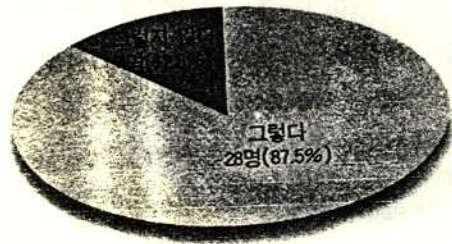


3. 교도소 내에서 누진처우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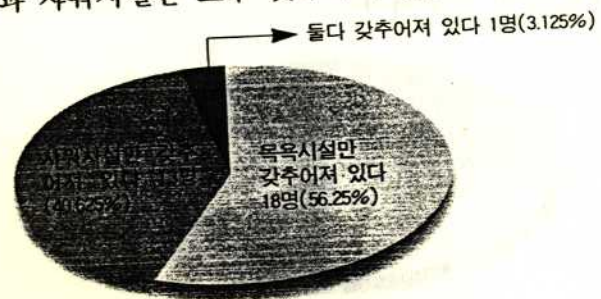


제22장 여성(여성만 답해 주십시오)

1. 신체검사, 목욕, 계호 등 제반 일들은 여자 교도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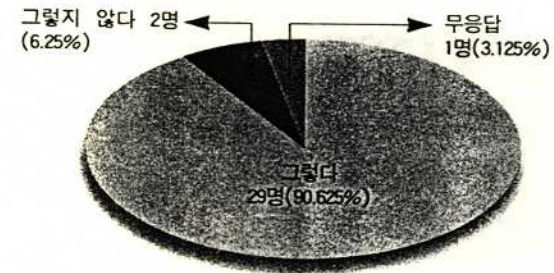
2. 목욕과 샤워시설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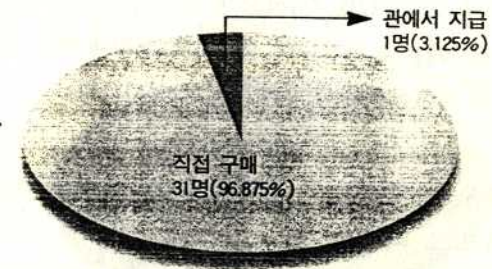
3. 남자 교도관의 여자사동 출입제한은 엄격한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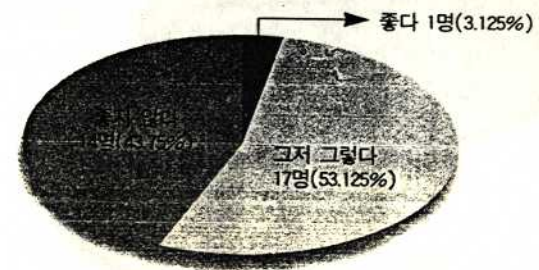
4. 직원식당의 취사를 여성 피구금자가 담당하는지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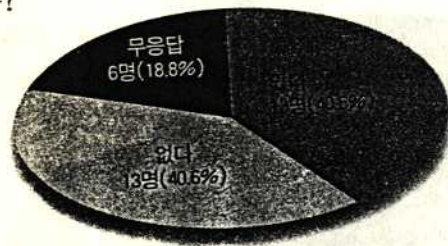
5. 여성 필수용품(생리대 등)의 구입 형태는 무엇입니까?



6. 필수용품의 질은 어떠한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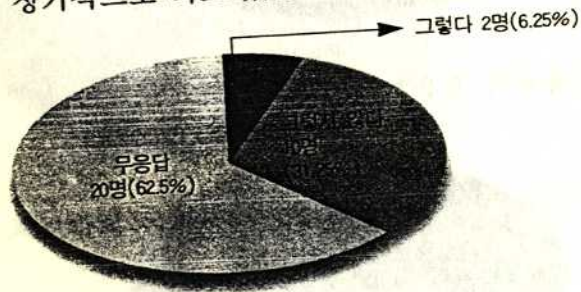


7. 여성들이 생리현상을 처리하는 데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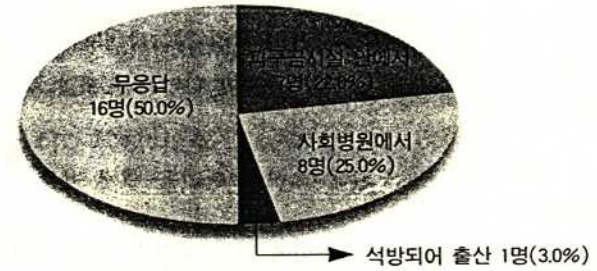


■ 문제점—잘 씻지 못한다(4명)/생리대 종류가 1종밖에 없다(4명)/생리대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(2명)/검사조사, 법원심리, 변호사접견 등 외부 출입시 몸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생리시에 생리대까지 보여주는 등 비인간적 신경이 이루어진다(1명)/진통제가 없다(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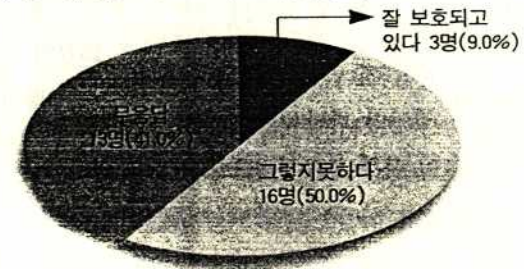
8. 임신중일 경우 건강검진은 자격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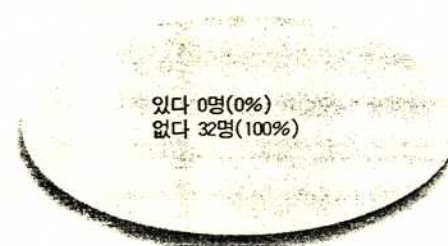
9.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 출산을 합니까?



10. 피구금자가 신생아(영아)와 함께 있는 경우 산모와 신생아는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?



11. 수용시설 내에서 화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?



12. 그밖에 여성 재소자와 관련해 특별히 하실 말씀은?

-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(6명)
- 여성에게 필요한 생리용품 등 필수용품이 다양해야 하고 구입이 수월해야 한다(2명)
- 빗 등 미용기구 사용이 수월해야 하고 머리를 쉽게 자를 수 있어야 한다(2명)
- 재소자와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(2명)
- 기타
몸조사(검신)시 치욕스럽다/씻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/최소한 생리시 누울 수 있거나 따뜻한 곳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/출산시에도 수감을 찬 채 있어야 하고 산후 15일이 되면 재수감되어 일반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/기결수용시 40~80명이 한 방에 수용되어진다/직업교육이 사회나 육체적으로 연계를 가져야 한다

제23장 기타

1. 출소 전과 출소 후에 정신적, 육체적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?(출소자들의 생생한 증언이므로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—편집자 주)

■ 건강악화

체력이 허약해졌다(6명)/건강이 매우 나빠졌다(3명)/운동부족으로 살이 쪘다(2명)/눈이 나빠짐/위장병이 생겼다/심한 소화불량/육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상해서 출소했다/허리, 무릎통증이 가중되었고 만성피로감을 느낀다/건강불량/허리디스크/약해진 관절 등 건강문제/외형적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속이 부실해진 것 같음, 입소 전보다 속이 상당히 좋지 않다/지병이 악화되었고 피부병은 치료를 해야 했다/장기가 나빠짐/소화기계통의 이상, 조금만 운동해도 몸이 아프다/무릎관절이 약해지고 몸이 붓고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였음/육체적으로는 고막에 이상이 생겼으며 운동부족으로 살이 너무 많이 쪘다/허리가 불편해졌다/체중이 줄었다/무릎이 매우 나빠짐/출소 후 정신이 멍해짐, 집중력이 떨어지고 귀가 멍하다. 걸어다닐 때 어지럽다/알레르기성 비염, 결막염/건강이 허약, 위, 안면마비, 무릎시림 등/만성비염과 기관지염 등 건강악화/소화기관, 동상으로 고생/건강이 많이 허약해지고 자주 악몽에 시달림/여성질환(구금기간 동안 생리가 없었다)/생리불순, 번비, 시력감퇴, 위장병 등의 질병, 항상 불을 켜놓은 생활이기에 어둠에 적응이 안됨/몸이 많이 상했다. 뼈가 약해져서 오래 걷거나 운동할 수 없고 힘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다/무릎관절이 좋지 않게 되었고 좁은 곳을 싫어하게 됨/무엇보다도 차고 추운 방에서 지낸 것이 여자는 자궁암을 많이 유발하고 있고,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쌓여 신경이 예민해져 출소 후 손발이 저리고 머

리가 자주 아픈 증세가 있다/출소 전엔 몸무게가 3개월에 16kg이 빠지고 심장병증세와 신경쇠약증세를 보임

■ 사회 부적응

사회적응에 문제가 있다(3명)/사회와 오래 격리되어 있다 보니 적응하기가 어렵다. 그런 시차적인 문제를 교도소에서 최대한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 방에 TV를 놓아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몸소 적용하게 해주었으면 한다. 왜 꼭 1, 2급수에게만 그러한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다/세상이 변해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다/피로감으로 생활에의 적응이 어려움/비록 1년이었지만 사회에 적응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고 느낌/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, 문명변화에 대한 이질감, 사회적응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름/악몽에 시달리고 사회 부적응, 허리의 통증/사회환경의 변화로 사회적응이 어려움/출소할 때 굳은 각오로 출소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쉽게 좌절하며 똑같은 생활이 연속 반복됨/좌골신경통, 척추질환/관절 허약, 건강 악화/직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전과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 다/출소 후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서 적응하기가 힘들었고, 위축감이 들었음/가정생활, 사회생활이 낯설고 사소한 일상생활에도 통제 받지 않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음

■ 육체적으로 약해졌고 사회적응이 힘들다

시력과 치아가 좋지 않음, 생활의 적응이 어려움/사회생활의 적응이 어려움, 육체적으로 병이 많이 들/육체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인 적응이 힘들/사회적응의 어려움, 육체적 건강악화/동상 등이 걸리고 경찰의 불심검문시에 위축

■ 정신적으로 나약해졌다

정신적으로 피폐(2명)/소심해졌다/솔직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졌다/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생활/정신적으로 위축/정신적인 황폐를 경험해야 했다/꿈속의 악몽/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현상, 원인

모를 구토현상, 출소 후에 수개월 동안 계속된 악몽, 심한 패배감, 피해의식, 무기력/살아가는 데 자신이 없어짐/육체적 변화보다는 정신적인 위축, 대인공포증/신경이 예민해지고 소심해지는 경향/정신적으로는 출소자에 대한 냉대를 해서 좀 허약해진 것 같다

■ 정신적·육체적으로 모두 약화되었다

자신감이 떨어지고 육체적 피곤/육체적, 정신적인 불안정/정신적으로는 정체된 공백기로 뒤떨어진 열등의식, 신체적으로는 운동부족 탓으로 허약해짐

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

정신적으로는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더욱 강고한 신념을 세우게 되었다/몸이 근육형이 되었다. 말수가 적어졌다/어렸을 때 수감이 되어선지 많은 책과 하루라도 빨리 가석방되기 위해 노력해 정신적으로 무척 성숙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. 그것이 사회에 꼭 적응될 수 있는 생각인 줄은 아직 모르겠지만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. 육체적으로 우선 방탕하게 지내지 않고 술, 담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기에 건강해진 것 같다/자아성찰의 계기가 됨/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강한 정신력이 뇌에서 사무쳤다/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/사람이 정직, 성실, 근면하여 인간답게 세상을 살아가며 인내와 긍지로 남을 돕고 봉사할 것입니다/종교 성향이 변화된 것이 매우 고무적/정신적으로 많이 누워치고 가정의 중요함과 위법성의 큰 뜻을 깨우쳤다/사회에서 죄만 짓지 않는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/정직하게 살아야 한다/사회성의 약화로 자신감이 떨어졌으나 육체적으로는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해짐/육체적으로 몸이 좀 상했다. 정신적 변화와 관련해서 양면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러 모로 세상을 배우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

■ 기타

아직 잘 모름/별 차이를 못 느낌/출소 후엔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났고 감옥의 악몽이 되살아날 때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안절부절/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좋다. 하지만 무언가 기술이 없으니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/감옥에 있을 때는 주체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전달되기 쉽다. 그래서 타협을 배우고 자신의 자주성을 목살하게 된다. 단 그간의 망가진 육체는 규칙적인 생활로 보신되었다. 출소 후에는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/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약해졌다/정신적 삶의 어느 정도 회의를 느꼈지만 어느 정도 극복했음. 독방 내 공기가 탁해서 목이 많이 안 좋아졌고 운동이 부족해서 약해짐/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며 심한 근육통과 지난 시간들이 악몽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3년 내내 징벌방에서 생활이 쉽게 잊혀지지 않고 있다/출소 전에는 한정된 생활 속에서 배급되는 음식과 피복 등으로 생활하며 지냈지만 출소 후에는 당장 먹고 자고 입을 걱정이 앞서다보니 그저 힘들다는 생각만 앞선다/장기 수감을 통해서 생활능력 상실을 양산하는 것을 절감하고 인권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/가혹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강인함을 개인적 의지로 쟁취되어야 하고 짧은 운동시간과 불청결의 문제로 신경, 관절의 건강상의 문제/앞으로 생활에 대한 불만, 만성적인 소화불량, 근력, 지구력의 감소/생활능력의 완전한 상실, 인권적,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연수함

2. 우리나라 감옥제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을 서술해 주십시오.

■ 교정교화는 없고 구금 통제만 있다

교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(5명)/소년수들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/교화의 목적이 아닌 격리. 감시의 목적의 수감은 교도관이

나 수용자에겐 인간성 황폐의 시간/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공간으로

■ 교도관들의 질에 문제가 있다

오래된 교도관들을 모두 내보내고 새롭고 참신한 교도관들을 써서 교도소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/먼저 재소자 교정교육에 신경을 쓰려면 교도소 직원들의 질을 높여야 한다. 직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직원들은 문제점이 많다.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은 직원들이나 직원 간부들이 권위의식을 꼭 버려야 한다. 정말 재소자들의 교정교화를 원한다면 직원들과 간부들이 격의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/교도관의 자질의 문제, 너무 폐쇄적이다/행정절차가 까다롭다. 교도관들의 반말 등/교도관의 인식부족, 공안사범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일반처우는 더욱 심함/재소자들을 무시하는 시선, 도둑놈이라고 하며 깔보는 교도관들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/교도관들의 임용자격이 의심스러우며 일부 교도관들의 부당한 범법행위를 보면서 교도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많은 의심이 듭니다/교도행정이 말로는 교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선에서는 보안 관련 업무가 많고, 교도관들이 나이가 많아 권위적이다. 한마디로 하자면 새정부 출범이후에 3대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아래에서는 강제화, 형식화되어 그 의미가 변질, 퇴색되고 있기에 교도관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교화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

■ 재소자 인권도 존중되어야

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됨/수용공간이 비좁음, 운동 면회 등의 시간부족, 인간적인 권리에 대한 배려 부족/인간사각의 지대/같은 구치소인데 서울 구치소와 성동 구치소의 처우나 검열기준이 서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하고 특히 검열이 심함/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. 체벌이 아닌 격리가 목적이라면 격리되어 있는 동안의 최대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

릴 수 있어야.../감옥은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/규칙이 너무 많다. 그대로 실행하자면 눈도 뜰 수도 없음, 하의상달의 수단, 의료사고, 인간적 문제/인격적 대우(반말 금지), 사소한 규제 철폐/관리들의 관성이 심하고 재소자들에 대한 권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음/인간적인 대우와 최소한의 처우의 문제/시설개선 및 청원 등의 재소자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/공안수와 일반수의 차별대우가 존재하고 소년범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하다. 행형법 등 재소자 권리를 보장할 내용이 비치 혹은 게재되어야 함/인간적인 대우/교도행정도 인권의 척도이다. 교도소를 민주화시키고 재소자 인권을 향상시켜 이 사회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해야/이름으로 부르기. 인격적 대우 바람/폭언 등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미결수의 수의 착용은 금지되어야. 인권의 개선이 필요/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/인권의 사각지대/비인간적이 측면이 존재/보복 차원의 처우, 교화, 인권존중이 우선 시되어야/재소자 인권을 존중해 달라/죄인(?)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. 꼭 짐승을 사육하는 것 같은 느낌. 재소자들이 그 기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아닌, 사회에 대해서 더 불만을 갖고 나갈 것 같다. 또한 감옥 안에서도 돈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은 대우받는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만연해 있다/많은 말은 필요없을 것 같다. 재소자도 인간이라는 의식, 재소자는 그저 범죄를 저질렀을 뿐 교도관과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기초적인 인식이 가장 절실하다/우리에 간혀 있는 동물처럼 주는 밥 먹고 이거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거 하는,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. 인간으로 대우하는 곳이 아니다/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인권을 탄압하는 곳이다/교도행정에 관심이 없다. 재소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

- 수용 시설의 문제와 낙후된 시설의 문제
정원 많기 때문에 큰 불평이 악순환/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받게 된다. 좀더 편안한 수감생활을 위하여 환경

변화를 주어야 한다. 미결수일지라도 TV시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청결한 관리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/교도관들의 처우 개선과 한 감옥 안에 천 명 이상의 수용은 부당/군산 교도소는 그런 대로 시설, 운영부분은 괜찮았지만 영등포 구치소는 낙후된 시설, 비위생, 심하게 엮매는 교도행정, 교도관 비리 등이 만연해 있다. 또한 전체적으로 인원초과로 기본적 인권이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다/난방 시설 절실/교도관의 근무태만으로 거실은 좁은 반면 인원은 너무 많다/과밀 수용으로 인해 효과적인 교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. 관료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

■ 구시대의 악습이다

좀더 발전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제도를 없애고 교도관 사이에서 내려오는 옛날 방식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방식대로 해야 한다/일제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한다/하루빨리 구시대 일제 때의 행형법을 고쳐서 선진국 행형법을 도입해 개선해야 할 것이며 시설이 너무 노후하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/일제시대의 감옥 형태와 관행의 지속/비민주적인 군사파쇼시대의 감옥

■ 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

과실범과 강력범들이 구분 없이 섞여 있고 교도관들이 교도를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가장 중요한 재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/일반 재소자의 경우 교정제도가 철저해야 하고 특히 교통 관련 사범은 다른 사범과 완전 분리하여 자유롭게 처우해야 하며 교정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/장애인에 대한 특별수용 혹은 수용시설의 설치가 필요, 안양 교도소에서는 정신장애자가 독거 수용중 자살한 사건이 발생, 무분별한 구속수사와 변호보장의 기회박탈,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위축감, 행정처리가 매우 늦고 미흡, 시설보완의 문제

■ 미결수용자 문제

미결수와 기결수의 차별적 대우 필요/미결수를 죄수 취급하는 것은 부당, 교화의 목적이 아니게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대함/미결수의 통제가 심하다. 운동시간이 너무 적다. 자유로움에 대한 편의 /미결수에 게 죄인 취급은 부당. 수용자들에게 행형법 교육의무화/시설의 열악과 미결수의 죄인 취급, 양심수에 대한 처우 더욱 엄격,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음

■ 기타

부식 유출문제, 잔반문제, 종교 권장문제, 인성교육문제 등 건달과 일반인의 형평성의 문제/사건을 조작하거나 과장해서 구금시키는 일은 없어야. 재소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해야. 교도관과 재소자들과의 부정이 비일비재/고문과 강압에 의한 사건조작으로 장기형을 받는 일이 없어야. 교화목적을 위한 정책과 방법이 필요/감옥 자체가 없어져야/행정편의주의의 생활과 교정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범죄양성소가 되는 것 같으며 유전무죄, 무전유죄의 말이 적용되어짐/다른 말들은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. 가출옥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/아직도 60년대에나 있을 법한 생활이 교도소에 있습니다. 문명이 발달한 만큼 교도소도 어느 정도 신생활이었으면 합니다/교정청의 독립과 교정직 공무원의 노조가 허용되어야. 교도관과 재소자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고 관료적인 교정간부들의 조기 퇴직이 필요하며 감옥시설이 줄어들어야 함/교정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고 의식, 설비가 낙후/공청회를 통한 투명성 확보/사범의 분리수용, 교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, 건강관리, 의식주 등의 제반 시설과 인원의 확충, 대중매체의 수용, 교도관의 의식자세의 정립/전면적인 시설의 보수와 법, 법칙 개정이 필요함/수용시설의 많은 개선이 필요, 전향제도의 폐지/교화보다는 재범을 가르치는 곳이다/보호관찰법을 폐지해야/폭과 시키고 싶다/흡연의 통제, 검열철폐/운동시간과 물 부족, 수용시설의 부족/운동시간이 없고 사단영창은 매우 불량, 육군 교도소 시설은 도

서, 신문, 면회의 어려움이 많음/외부에 감옥생활이 공개되어야/헌병대 영창은 세면시간 3분, 독서금지, 화장실 이용 1분, 편지금지, 하루 종일 부동자세 등으로 헌병이나 수사관들에 의해 영창의 분위기 조성/육만 나온다/개선할 사항 많음/가출옥 등의 제도가 너무 빈약해 재정이나 인력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/시설에 비해 수용인원이 너무 많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으며 편하기 때문에 재범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/규칙이 너무 많아 그대로 시행하면 눈도 뜰 여지가 없다. 모든 것이 상하식으로 하의상달의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수용의사도 없어 보인다. 수행자의 애로 해결은 참고 견디는 것이 상책. 의료요원, 시설, 운동에 절대적 개혁이 필요하다/교도소가 아니고 형무소, 또는 까막소라고 부르는 것이 나올 것이다/형편만 조금 나아진다면 감옥제도 개선을 하는 데에 미력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미흡/교도는 없다. 단지 징역만 있을 뿐이다. 그리고 조직 폭력배와 교도관이 유착하여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한다/우리나라 정치판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.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/갱생이 아니고 오기만 배워 나온다.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/영망/개선 필요/정신적, 신체적 자유를 과대하게 구속하므로 단순히 시간 때우기 이외의 의미가 없다. 권력과 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노골적이다/자유는 극도로의 불필요한 제한/너무 폐쇄되어 있다. 교도소의 소장은 황제와 다르지 않다. 재소자들의 권리를 교도관이 배풀어 주는 특혜로 생각한다/전면적 개편 필요/제도적 개혁/개방화, 양질개선, 교도관의 인식교육 절실/폐쇄적이고 교정교화의 제도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꼼짝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. 학력수준이 낮아 감옥 안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시반 운영을 잘 활용하고 징벌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함. 한겨레 사설란에 인권유린기사가 실린 다음날에 징벌자에 대한 쇠사슬을 풀었다/천안 교도소는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무척이나 엄격

하였다/교도행정을 위한 수용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범죄의 질만 더욱 심화됨/보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,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리 적용/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음/지독하게 낙후, 시설과 직원의 의식이 낙후. 특히 서울 구치소 직원들이 심하다/1890년대의 서구 수준/가족과의 격리, 경제적 불이익에 이루어지는 인권의 침해는 잘못됨. 평균적 수준의 일상생활의 보장과 고민의 상담이 필요, 실질적인 교화가 가능해야/교정교화의 불가능, 턱없이 부족한 직원수로 구금 확보만 가능. 관료주의, 권위주의 등으로 재소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심각/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. 재판에 위한 준비가 불가능. 시설의 열악/판사, 검사, 변호사가 연대하는 느낌이 든다.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무방한 사건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. 미결수 80일 정도 변론비가 5백에서 1천 2백만 원이다/감옥 안에서도 수갑을 채운다(검찰, 법원에 있는 감옥)/현실적으로 행형법을 개정하고 그 법대로만 해도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이다. 교도관들의 체질개선도 시급하다. 건달정역도 극복해야 힘없는 재소자들도 살 수 있다

부 록

교도소 · 구치소 인권실태 설문조사

천주교 인권위원회
인권운동사랑방

응답자 인적사항

(원하지 않으면 굵은 선 안은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러나, 가급적 써 주십시오.)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이름 | | | | | 전화번호 | | |
| 주소 | | | | | | | |
| 성별 | 남·여 | 종교 | | | ()교 없음 | | |
| 나이 | 19년생 | 혼인관계 | 유무 | 입소전 직업 | | | |
| 적용법률 | 법위반 | 형량 | 년월 | 전과 | ()회 | | |
| 입소 교소(구치)소 | 교도(구치)소 (19년월일) | | 출소 교도(구치)소 | | 교도(구치)소 (19년월일) | | |
| 수용기간 | ()교도(구치)소 ()년 ()개월간 | | | | | | |
| | ()교도(구치)소 ()년 ()개월간 | | | | | | |
| | ()교도(구치)소 ()년 ()개월간 | | | | | | |
| | ()교도(구치)소 ()년 ()개월간 | | | | | | |
| | ()교도(구치)소 ()년 ()개월간 | | | | | | |
| 석방 형태 | 미결 상태에서 집행유예 가석방 특사 | | | | | | |
| | 기결 (1급) (2급) (3급) (4급) (무급) 상태에서 만기출소 집행유예 가석방 특사 | | | | | | |

유의사항

1. 설문에 대한 응답은 0표 하거나 되도록 자세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.
2. 이감과 전방 등으로 인해 구금시설 2곳 이상을 경험하신 분은 그중 맨 마지막에 살았던 교도(구치)소 한 곳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.
3.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교도(구치)소에 대해서도 응답하고자 할 때는 각 설문 항목의 여백 부분에 기입하여 주십시오.

따라서 이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, 당신이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_____ 교도(구치)소에 관한 것입니다.

당신이 생활했던 방은 (독거실 / 혼거실)이었으며, 그 당시 당신은 (출역 / 불취업)했습니다. 행정급수는 _____ 급이었습니다.

그리고 각 설문 항목의 여백 부분에 기입할 당신의 대답은, _____ 교도(구치)소에 관한 것입니다.

당신이 생활했던 방은 (독거실 / 혼거실)이었으며, 그 당시 당신은 (출역 / 불취업)했습니다. 행정급수는 _____ 급이었습니다.

7. 감방 화장실은 위생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위생적
- ③ 비위생적

- ② 보통
- ④ 매우 비위생적

8. 화장실 냄새는 어떠하였습니까?

- ① 매우 심하다
- ③ 보통이다

- ② 심하다
- ④ 냄새 나지 않는다

9. 그밖에 화장실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?

10. 겨울 감방 온도는 어떠했습니까?

- ① 몹시 추웠다
- ③ 추웠지만 견딜 만했다

- ② 추웠다.
- ④ 따뜻했다

11. 당신은 동상에 걸린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있다 (부위 —)
- ② 없다

12. 감방에 난방 시설이 있었습니까?

- ① 있다

- ② 없다

13. 사동 복도의 난방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?

- ① 스팀

- ② 석유난로 _____ 개

- ③ 연탄난로 _____ 개

14. 감방에 습기가 찰니까?

- ① 불쾌할 정도로 아주 많이 습기가 찬다
- ② 습기가 많이 차는 편이다

- ③ 보통이다

- ④ 습기가 차지 않는다

15. 감방에 수도시설이 있었습니까?

- ① 있다

- ② 없다

16. 감방에 책상이 비치되어 있었습니까?

- ① 있다

- ② 없다

17. 감방에 거울이 있었습니까?

- ① 있다

- ② 없다

18. 수감생활중 시계를 볼 수 있었습니까?

- ① 있었다

- ② 없었다

19. 감방의 모든 창문에 유리가 끼워졌습니까, 아니면 비닐이 쳐졌습니까?

- ① 유리가 끼워졌다

- ② 비닐이 쳐져 있다

- ③ 기타 ()

20. 그밖에 수용시설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?

D. 신체 위생

1. 당신은 목욕 혹은 샤워를 며칠마다 할 수 있었습니까?

여름 — ()일에 1회, 겨울 — ()일에 1회

2. 목욕 혹은 샤워는 몇분 동안 할 수 있었습니까? ()분

3. 목욕 혹은 샤워를 할 때 물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?
 ① 충분했다. ② 아쉽지만 적당했다.
 ③ 부족했다. ④ 아주 부족했다.
4. 속옷은 얼마나 자주 빨 수 있었습니까?
 ① 수시로 빨았다 ② 일주일에 1회
 ③ 일주일에 2회 ④ 기타 ()
5. 겉옷(수인복)은 얼마나 자주 빨 수 있었습니까?
 ① 수시로 빨았다 ② 가끔 빨았다
 ③ 겉옷 세탁은 할 수 없었다 ④ 기타 ()
6. 세탁은 어디서 했습니까?
 ① 본인이 방 안에서 한다
 ② 정해진 세탁시간에 세탁장에서 한다
 ③ 공장 수도기에서 세탁을 한다
 ④ 기타 ()
7.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까?
 ① 있다 ② 없다
8. 침구(이불, 모포, 침낭)를 자주 햇볕에 말릴 수 있었습니까?
 ① 언제든지 말릴 수 있었다 ② 1주일에 1회
 ③ 2주일에 1회 ④ 말릴 수 없었다
 ⑤ 기타 ()
9. 이발은 며칠마다 할 수 있었습니까?
 ① 언제든지 ② 2주에 1회
 ③ 1달에 1회 ④ 기타 ()

10. 머리는 자유롭게 조발했습니까? 아니면 짧게 깎아야 했습니까?
 ① 자유롭게 조발 ② 짧게 깎았으며 앞머리는 _____cm 이하
11. 면도는 며칠마다 할 수 있었습니까?
 ① 언제든지 ② 1주에 1회
 ③ 2주에 1회 ④ 기타 ()
12. 수영을 기를 수 있었습니까?
 ① 수영은 기를 수 없었고 밀어야 했다
 ②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를 수 있었다
13. 그밖에 신체 위생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?

E. 의류 및 침구

1. 겨울에 어떤 옷이 지급됩니까
 ① 솜옷 ② 겹옷
 ③ 조끼 ④ 내의
 ⑤ 기타 ()
2. 관에서 지급되는 옷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?
 ① 너무 얇아서 몹시 춥다 ② 약간 춥다
 ③ 적당하다 ④ 거추장스럽고 덥다
3. 겨울옷은 언제 지급되며, 그 시기는 적당합니까?
 _____ 월 _____ 일 쯤에 지급되며.

- ① 너무 이르다 ② 적당하다
③ 너무 늦다

4. 겨울에 어떤 침구가 지급됩니까?

- ① 모포 (1인당 장) ② 솜이불 (인당 1장)
③ 매트리스 (인당 1장) ④ 기타 ()

5. 겨울용 침구로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?

- ① 부족하며 춥다 ② 적당하다
③ 충분하며 전혀 춥지 않다

6. 겨울용 침구는 언제 지급되며, 그 시기는 적당합니까?

_____ 월 _____ 일 즈음에 지급되며,

- ① 너무 이르다 ② 적당하다
③ 너무 늦다

7. 지급되는 겨울용 침구의 위생상태는 어떠합니까?

- ① 매우 비위생적이며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
② 냄새가 많이 나지만 견딜 만하다
③ 보통이다
④ 위생적이며 쾌적하다

8. 당신은 관에서 지급되는 수인복(하복, 춘추복, 동복)을 입으면서 어떤 기분입니까?

- ① 몹시 치욕스럽고 굴욕감을 느낀다
② 약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서글퍼지는 정도다
③ 그저 덤덤하다
④ 옷이 잘 만들어져 만족스럽다

9. 수감생활중 개인 모포는 몇장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?

여름 — ()장 겨울 — ()장

10. 수감생활중 침낭의 보유가 허가되었습니까?

- ① 허가되었다 ② 허가되지 않았다
③ 침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

11. 관급 혹은 자번 침구와 의류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?

F. 일과

1. 기상시간은 몇시였으며,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?

아침 _____ 시이며,

- ① 너무 이르다 ② 적당하다
③ 너무 늦다

2. 저녁 식사는 몇시에 했으며,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?

오후 _____ 시이며,

- ① 너무 이르다 ② 적당하다
③ 너무 늦다

3. 취침시간은 몇시였으며,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?

저녁 _____ 시이며,

- ① 너무 이르다 ② 적당하다
③ 너무 늦다

4. 수면시간은 하루에 몇시간이며, 그 수면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?

H. 운동·스포츠 및 오락

1.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했습니까?
① 15분 이내 ② 30분 이내
③ 1시간 이내
2. 당신이 있던 교도(구치)소에 운동시설, 운동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?
① 있다. 운동시설 — ()
 운동기구 — ()
② 없다
3. 당신이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시설이나 기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?
① 예 ② 아니오
4. 운동을 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였으며, 대략 몇 사람 정도가 함께 운동을 했습니까?
① 대운동장 ② 사동 사이 마당
③ 담 옆 ④ 독거용 특별운동장
⑤ 기타 _____에서 _____명 정도가 같이 운동을 했다.
5. 재소자 운동대회가 1년에 몇번 있었습니까? ()번
6. 재소자 운동대회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까?
① 있다 ② 없다
7.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(구치)소에서 바둑과 장기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까?
① 그렇다 ② 아니다

8. 영화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까?
① 일년에 _____번 정도 구경할 수 있었다
② 가끔 구경한 일이 있다
③ 한두 번 구경한 일이 있다
④ 한번도 구경하지 못했다
9. 라디오 방송을 어느 때 틀어주었습니까?
① 아침 ② 점심
③ 저녁 ④ 취침 전
⑤ 기타
10. 라디오 방송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?
① 가요방송 ② 스포츠 중계
③ 라디오 뉴스(지난 것) ④ 명상의 시간
⑤ 기타
11. TV나 라디오의 채널 선택권은 있었습니까?
① 있었다 ② 없었다
12. 교도(구치)소에서 TV 시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?
① 매주 _____요일에 _____시간씩 정기적으로 했다
② 부정기적으로 자주 했다
③ 부정기적으로 가끔 한 일이 있다
④ 시청한 일이 없다
13. TV를 시청했다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까?
① 가요 ② 뉴스
③ 교양 ④ 스포츠 중계
⑤ 기타 ()

14. 이 외에 교도(구치)소에 어떤 오락거리가 있었습니까? 열거해 주십시오.

15. 그밖에 운동과 오락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?

I. 의료

1. 교도(구치)소 입소 직후에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?

- ① 예
- ② 아니오

2. 위 설문에서, 입소 직후에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까?

- ① 키 재기
- ② 몸무게 측정
- ③ 시력 검사
- ④ 치아 검사
- ⑤ 소변 검사
- ⑥ 피 검사
- ⑦ 엑스-레이 촬영
- ⑧ 혈압 검사
- ⑨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
- ⑩ 기타 ()

3. 수감 중 의사(의무관)의 정기검진이 있었습니까?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?

- ① 정기검진을 받아본 일이 없다
 - ② 정기검진을 받아본 일이 있다
- _____개월에 1회 정도 있었(던 것 같)다

4. 당신이 있던 교도(구치)소에는 치과의사나 치과 전문 공중보건역이 있었습니까?

- ① 있었다
- ② 없었다
- ③ 모르겠다

5. 당신이 있던 교도(구치)소에는 약사가 있었습니까?

- ① 있었다
- ② 없었다
- ③ 모르겠다

6. 당신이 아파서 의무과에 가면 누가 진찰을 했습니까?

- ① 의무관
- ② 공중보건역
- ③ 교도관
- ④ 재소자
- ⑤ 모르겠다

7. 당신이 아파서 의무과에 가면 누가 약을 조제했습니까?

- ① 의무관
- ② 약사
- ③ 교도관
- ④ 재소자
- ⑤ 모르겠다

8. 당신은 교도(구치)소에서 병에 걸린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있다 (병명 —)
- ② 없다

9.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가족의 뒷바라지가 있었습니까?

- ① 있었다
- ② 없었다

10.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병동에 입원하기가 수월했습니까?

- ① 수월했다
- ② 보통이었다
- ③ 힘들었다
- ④ 불가능했다

11. 당신은 외부 병원의 진찰을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있다 (병명 —)
- ② 없다

12. 외부 병원의 진찰이 쉽게 이루어집니까?

- ① 언제나 가능했다 ② 돈이 없이는 어려웠다
- ③ 돈이 있어도 어려웠다

13. 외부에서 약품을 차입하기가 가능했습니까?

- ① 가능했다
- ② 어려웠다
- ③ 불가능했다
- ④ 외부 약품의 차입을 시도하지 않았다

14.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겨울에 보온통(유단뽕)을 지급받은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있다 ② 없다 (이유 —)

15. 교도(구치)소의 의료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?

J. 규율 및 징벌

1.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있다 ② 없다

2. 위 질문에 "있다"라고 대답한 분은 어떤 폭행을 당했습니까?

- ① 몽둥이로 구타 ② 손으로 구타
- ③ 물고문 ④ 발로 차기
- ⑤ 수갑, 포승 따위의 과잉 사용 ⑥ 기합
- ⑦ 회초리 ⑧ 심한 욕설
- ⑨ 기타 ()

3. 당신은 행형법 제46조에 규정된 징벌의 다섯 가지 종류를 알고 있습니까?

- ① 알고 있다 ② 알고 있지 못하다

4. 당신은 징벌받은 경험이 있습니까?

- ① 있다 ② 없다

5. 위 설문에서 "있다"고 대답한 분은 어떤 규율위반 행위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까? (자세히)

6. 그 규율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까?

- ① 당했다 (어떻게 —) ② 당하지 않았다

7. 당신이 징벌을 받았다면 어떤 종류의 징벌을 선고 받았습니까?

- ① 경고
- ② 1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
- ③ 청원작업의 정지
- ④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
- ⑤ 2월 이내의 금치

8. 당신이 징벌을 받았다면 정식으로 징벌의 종류와 기간, 그리고 징벌 이유를 통지 받았습니까?

- ① 정식 서면으로 통보 받았다
- ② 계장 이상의 교도(구치)소 간부로부터 구두로 통지 받았다
- ③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자리에서 통지 받았다
- ④ 주임으로부터 정식으로 통지 받았다

- ⑤ 사동 담당교도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통지 받았다
- ⑥ 정식으로 통보 받은 바 없고 지나가는 말로 내가 징벌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
- ⑦ 어떤 형태로든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

9. 당신이 징벌 받았다면, 다음과 같은 처분을 아울러 받았습니까?

- ① 가족이나 친지와 의 면회 금지
- ② 편지의 수신과 발신 금지
- ③ 운동 금지
- ④ 종교집회 참가 금지
- ⑤ 위안·오락 등 일반 집회 참가 금지
- ⑥ 세면 금지 또는 제한 ()
- ⑦ 목욕 금지 또는 제한 ()
- ⑧ 침구나 의류등 사용 제한 ()
- ⑨ 기타 ()

10. 당신은 교도(구치)소에서 위 다섯가지 징벌 종류 외에 변질된 징벌 형태를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있다 (어떤 형태 —) ② 없다

11. 당신이 징벌을 받았다면 징벌 중에 계구(포승, 수갑, 사슬, 안면보호구)를 착용한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있다 ② 없다

12. 위 질문에 "있다"라고 대답한 분은 아래 계구 중 어떤 것을 착용했습니까?

- ① 포승 ② 수갑
- ③ 사슬 ④ 안면보호구
- ④ 기타 ()

13. 징벌을 어떤 장소에서 받았습니까?

- ① 징벌방 ② 먹방
- ③ 일반 독거방 ⑤ 기타 ()

14. 당신이 만약 징벌방을 경험했다면 그 구조를 설명해 주십시오.

15. 당신이 만약 먹방을 경험했다면 그 구조를 설명해 주십시오.

16. 징벌 중 교도(구치)소 당국 측에서 체중, 혈압을 재는 등 건강체크를 했습니까?

- ① 했다 ② 하지 않았다

17. 교도소 간부들로 이루어진 징벌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?

-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
- ③ 들은 적은 있다

18. 징벌을 받을 때,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또는 징벌위원회 앞으로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?

-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

19. 징벌을 받을 때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신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있다 ② 없다

20.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?

- ① 해보았다 ② 해보지 않았다
③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
21.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?
① 있다 ② 없다
22. 단식을 해보았다면 몇번 해보았으며, 각각 며칠씩 해보았습니까?
____ 번 했다. 보통 단식기간은 _____ 일 동안 했다.
23. 단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다?

24. 단식을 했다면 강제급식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?
① 있다 ② 없다
25. 강제급식은 누가 했습니까?
① 의무과장 ② 의무과 직원
③ 주임 ④ 보안과 간부
⑤ 교사 ⑥ 기타

26. 징벌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?

K. 불복신청제도

당신은 수감생활 과정에서 당신에게 강요되는 교도(구치)소의 위법적인, 혹은 부당한 처사에 정식으로 불복신청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불복신청이란 권한 있는 다른 행정기

관에 그 처사의 취소나 변경을 위하여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.

1. 혹시 당신은 교도(구치)소에 입소할 때 불복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교도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
① 있다 ② 없다
2. 위 질문에 “있다”라고 대답한 분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통지 받았습니까?
① 문서로 통지 받았다 ② 말로 통지 받았다
③ 기타 ()
3. 담당 교도관에게 소장 면담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?
① 있다 ② 없다
4. 위 질문에 “있다”라고 대답한 분은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?
① 쉽게 받아들여졌다 ② 어렵게 받아들여졌다
③ 받아들여지지 않았다
5. 소장을 실제로 면담해본 일이 있습니까?
① 있다 (몇번 —) ② 없다
6.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하기 위하여 집필 신청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?
① 있다 (몇번 —) ② 없다
7. 청원 집필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까?
① 받아들여졌다 ② 정식으로 거부되었다
③ 묵살 당했다

8. 판사, 검사, 법무부 당국자가 교도(구치)소를 순회 점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?
 ① 알고 있다 ②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다
 ③ 모른다

9. 위 순회 점검 때 검열관에게 말로 혹은 문서로 청원을 하려고 한 일이 있습니까?
 ① 있다 ② 없다

10. 위 질문에 "없다"라고 답한 분은 왜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까,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.
 ① 누가 순시하는지 전혀 몰랐다
 ② 교도(구치)소 당국의 보복이 두려웠다
 ③ 청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
 ④ 수감생활에 불편이 없었기 때문이다
 ⑤ 기타()

11. 순회 검열관에게 청원하려고 한 분은 교도(구치)소 당국자에 의하여 방해 받거나 제지 당한 일이 있습니까?
 ① 있다 ② 없다

12. 불복신청제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은?

L. 면회

1. 당신의 실제 면회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?
 보통 ____분 정도였으며, 많을 때는 ____분, 적을 때는 ____분이었다.

2. 면회 시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
 ① 충분하다
 ② 조금 아쉽지만 그런대로 부족하지는 않다
 ③ 부족한 편이며, ()분 정도는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
 ④ 터무니없이 부족하며, ()분 정도는 면회할 수 있어야 한다

3. 면회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분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 ① 시설 부족 ② 인력(교도관) 부족
 ③ 시설과 인력 모두 보족 ④ 수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 부족
 ⑤ 보안상 이유 ⑥ 기타 ()

4. 토요일 오후시간에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?
 ① 할 수 있었다 ② 할 수 없었다
 ③ 잘 모르겠다

5. 일요일에도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?
 ① 할 수 있었다 ② 할 수 없었다
 ③ 잘 모르겠다

6. 교도(구치)소에서 면회객을 제한했습니까? 아니면 아무나 면회시켜 주었습니까?
 ① 가족에 한정되었다
 ② 가족과 함께 오는 친척에 한정되었다
 ③ 가족, 친척 및 가족과 함께 오는 친지에 한정되었다
 ④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아도 가족이 전화로 신분만 확인해주면 친지도 면회할 수 있었다
 ⑤ 공범이 아니거나 출소 후 일정한 시일이 지난 사람이면 누구나 면회할 수 있었다
 ⑥ 찾아오는 모든 사람과 면회할 수 있었다

7. 어린이 혹은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면회는 허가되었습니까?

- ① 허가되었다
- ② 금지되었다
- ③ 부분적으로 제한되었다(제한 내용 —)
- ④ 시도해보지도 않았다

8. 면회실은 몇실이나 있었습니까? 그 수는 충분한 면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?

_____ 실 있었으며, 그 수는 인도적인 면회시간을 보장하는데 (① 충분한 수준 / ② 적당한 수준 / ③ 부족한 수준)이었다고 생각한다.

9. 면회실은 면회객의 얼굴이 환히 보일 만큼 밝았습니까?

- ① 충분히 밝았다
- ② 적당했다
- ③ 약간 어두웠다
- ④ 매우 어두웠다

10. 면회할 때 자연의 목소리로 대화를 했습니까, 아니면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대화를 했습니까?

- ① 자연의 목소리로
- ② 인터폰 스피커로

11. 면회할 때 면회객의 말이 잘 들렸습니까?

- ① 잘 들렸다
- ② 잘 들리지 않았다
- ③ 알아듣기 힘들었다

12. 면회는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까?

- ① 매우 자유로웠다
- ② 입회교도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유로웠다
- ③ 입회교도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부자유스러웠다
- ④ 매우 부자유스러웠다

13. 당신은 면회객과 대화할 때 입회교도관으로부터 제지 당한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자주 있었다
- ② 한두 번 있었다
- ③ 대화 내용을 조심했기 때문에 한번도 없었다
- ④ 거리낌 없이 대화했지만 한번도 제지 당하지 않았다

14. 제지 당했다면 어떤 식으로 당했습니까?

- ① 면회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
- ② 교도관이 대화를 중단시키고 주의를 준 뒤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
- ③ 대화 도중에 가벼운 주의를 받았다
- ④ 기타 ()

15. 제지 당했다면 어떤 대화 내용 때문이었습니까?

- ① 당해 사건에 관한 이야기
- ② 교도소 내부 사정에 관한 이야기
- ③ 면회객과 다투었을 때
- ④ 정치나 이념에 관한 이야기
- ⑤ 경찰관, 검사, 교도관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
- ⑥ 기타 ()

16. 수감중 면회가 금지된 일이 있습니까? 있다면 그 이유와 금지 당한 기간은?

- ① 있다 (금지기간 — 금지이유 —)
- ② 없다

17. 면회 금지를 당했다고 대답한 분은 그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 등에 불복 신청을 해보았습니까?

- ① 해보았다 (결과 —)
- ② 해보지 않았다

18. 당신은 특별면회(면회실 외 장소에서 칸막이 없이 면회)를 한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자주 했다 ② 1년에 서너 번
- ③ 1년에 한번 정도 ④ 한두 번 해봤다
- ⑤ 해본 일이 없다

19. 특별면회를 했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?

- ① 우량수 ② 자매결연
- ③ 면회객의 특수한 신분 때문 ④ 모른다
- ⑤ 기타 ()

20. 특수신분의 면회객과 특별면회를 했다면 그 면회객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?

면회객 신분은 ()였다

21. 면회 온 당신의 가족은 보통 면회신청을 해놓고 얼마나 기다려야 했습니까?

- ① 15분 ② 30분
- ③ 45분 ④ 1시간
- ⑤ 1시간 이상

22. 면회에 대하여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은?

M. 편지

1. 편지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써야 했습니까?

① 그렇다 (장소 —)

(시간 —)

② 정해진 곳에서 써야 했지만 (장소 —)

일과 시간이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었다

③ 장소도 시간도 정해져 있었지만 사실상 묵인되어, 일과시간 외에 감방에서도 썼다

2.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대가 제한되어 있었습니까? 아니면 아무에게나 보낼 수 있었습니까?

- ① 가족에 한정
- ② 가족과 친척에 한정
- ③ 가족, 친척 및 신분이 확인된 친지에 한정
- ④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보낼 수 있었다
- ⑤ 기타 제한이 있었다 ()

3. 당신이 쓴 편지를 교도(구치)소 당국이 불허한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자주 있었다 ② 몇번 있었다
- ③ 한두 번 있었다 ④ 한번도 없었다
- ⑤ 모른다

4.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불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
5. 당신이 쓴 편지가 불허되면 교도(구치)소 당국은 불허 사실을 알려줍니까?

- ① 정식으로 알려준다
- ② 비공식으로 알려준다
- ③ 알려주지 않는다
- ④ 비공식으로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

6. 당신이 쓴 편지가 불허되면 그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?

- ① 폐기처분
- ② 영치 (출소할 때 가지고 나간다)
- ③ 기타 ()

7. 당신이 쓴 편지를 교도(구치)소 당국이 부분적으로 지우고 내보낸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자주 있었다
- ② 몇 번 있었다
- ③ 한두 번 있었다
- ④ 한번도 없었다
- ⑤ 모른다

8.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지워졌던 것입니까?

9. 외부에서 당신에게 온 편지를 교도(구치)소 당국이 불허한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자주 있었다
- ② 가끔 있었다
- ③ 한두 번 있었다
- ④ 한번도 없었다
- ⑤ 모른다

10.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불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
11. 외부에서 온 편지가 불허되면 교도(구치)소 당국은 불허 사실을 알려줍니까?

- ① 정식으로 알려준다
- ② 비공식으로 알려준다
- ③ 알려주지 않는다

④ 비공식으로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

12. 외부에서 온 편지가 불허되면 그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?

- ① 폐기처분
- ② 영치 (출소할 때 가지고 나간다)
- ③ 기타 ()

13. 외부에서 당신에게 온 편지를 교도(구치)소 당국이 부분적으로 지우고 준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자주 있었다
- ② 가끔 있었다
- ③ 한두 번 있었다
- ④ 한번도 없었다
- ⑤ 모른다

14.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지워졌던 것입니까?

15. 편지가 도착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?

당신이 쓴 편지가 외부 사람에게 도착할 때까지, 약 _____ 일
외부 사람의 편지가 당신에게 배달될 때까지, 약 _____ 일

16. 편지문제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?

N. 도서·신문 열독 등

1. 당신이 있던 교도(구치)소에는 오락, 교양 및 전문 도서가 구비된 도서실이 있었습니까?

- ① 있다
- ② 없다

③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④ 모른다

2. 도서관이 있다면 소장된 책의 권수와 종류의 다양성은 만족스럽습니까?

- ① 매우 만족스럽다 (약 권)
- ② 지적 욕구는 대체로 충족된다 (약 권)
- ③ 불만족스럽다 (약 권)
- ④ 터무니없이 빈약하다 (약 권)
- ⑤ 어떤 책들이 몇권이나 있는지 모르겠다

3. 도서관이 있다면 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?

- ① 정기적으로 직접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람하거나 빌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
- ② 사동과 공장에 비치된 도서목록을 보고 정기적으로 책을 신청하면 갖다주게 되어 있다
- ③ 교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사동과 공장마다 책을 갖다주면 그 중에서 골라 보게 되어 있다
- ④ 담당 교도관에게 부탁하면 교도관이 교무과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다
- ⑤ 정확한 이용방법은 모른다
- ⑥ 기타 ()

4. 도서관의 이용은 쉽고 자유로웠습니까?

- ① 비교적 쉽고 자유로웠다 ② 보통이다
- ③ 비교적 까다롭고 부자유스러웠다 ④ 매우 까다롭고 부자유스러웠다
- ⑤ 잘 모르겠다

5. 관책을 빌려본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빌려볼 수 있습니까?

- ① 한달에 10권 이상 ② 한달에 6~10권
- ③ 한달에 3~5권 ④ 한달에 1~2권
- ⑤ 한달에 1권 이하

6. 당신이 미결수로 있던 구치소는 당신의 소송에 도움이 되는 최신의 법률 서적이나 법전을 비치해 두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까?

- ① 수감자용으로는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
- ② 비치되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책이 부족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
- ③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
- ④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다

7.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(구치)소는 행형법, 행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재소자용으로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?

- ① 비치되어 있었으며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다
- ② 비치되어 있었지만 열람하기가 어려웠다
- ③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
- ④ 행형법이 뭔지 모른다

8. 당신의 감방에서 외부에서 차입된 책을 몇권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?

규정상으로는 ()권이었고 현실적으로는,

- ① 무한정 ② 40권 정도
- ③ 30권 정도 ④ 20권 정도
- ⑤ 10권 정도 ⑥ 10권 미만

9. 외부에서 차입된 책이 불허된 일이 있습니까?

- ① 불허된 일이 있다 ② 불허된 일이 없다

10. 불허된 일이 있다면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?

11. 당신의 책이 불허된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?

- ① 음란·외설
- ② 폭력
- ③ 범죄수법의 노골적인 묘사 (추리소설 등)
- ④ 교도소 내막에 관한 내용
- ⑤ 교도소 행정이나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
- ⑥ 이적성 혹은 마르크스-레닌주의
- ⑦ 시사성
- ⑧ 교화상 이유
- ⑨ 기타 ()

12. 차입된 잡지 내용이 삭제되어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?
- ①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 ②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
 - ③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다 ④ 그런 일이 없었다

13. 잡지 내용이 삭제된 일이 있다면 그 잡지 이름과 기사 이름은?

14. 법무부에서 각 수용시설에 내려보내는 금서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?

- ① 금서목록을 직접 본 일이 있다
- ② 그런 금서목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
- ③ 그런 금서목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
- ④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

15. 소내에서 수감자들이 서로 책을 빌려 볼 수 있습니까?

- ① 원래 규칙위반이지만 매우 자유롭게 빌려 볼 수 있다
- ② 원래 규칙위반이지만 요령껏 빌려 볼 수 있다
- ③ 빌려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

- ④ 빌려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

16. 영치금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? 한달에 몇번이나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?

- ① 구입할 수 없었다
- ② 한달에 ()번 구입할 수 있었다.

17. 도서 열독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?

18. 출소 직전에 신문을 구독했습니까? 구독했다면 어떤 신문을 구독했습니까?

- ① 구독했다 (신문 이름 —)
- ② 구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
- ③ 구독이 허가되지 않았다
(이유 —)

19. 당신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(구치)소는 구독할 돈이 없는 수감자를 위하여 별도로 신문을 비치하고 있었습니까?

- ① 비치하고 있었다 ②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

20. 신문을 구독했다면 그 신문의 일부 기사가 삭제되거나 말소된 일이 있습니까?

- ① 자주 있었다 ② 가끔 있었다
- ③ 거의 없었다 ④ 한번도 없었다

21. 어떤 기사가 삭제되거나 말소되었습니까?

- ① 교도소 내의 비리사건 ② 시국 관련 기사

- ③ 수감자의 인권과 관련되는 기사 ④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기사
 ⑤ 기타 ()
 ⑥ 어떤 기사가 삭제되거나 말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

22. (부분적으로 삭제된 것이라도) 방송 뉴스를 청취할 수 있었습니까?
 ① 거의 매일 청취할 수 있었다 ② 가끔 청취할 수 있었다
 ③ 청취할 수 없었다

23. 그밖에 신문 구독과 라디오 뉴스 청취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
 씁니까?
 (이유 —)

0. 종교

1. 당신이 갖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?

- ① 기독교 ② 천주교
 ③ 불교 ④ 기타
 ⑤ 없음

2. 당신이 종교를 갖고 있다면, 교도(구치)소에서의 종교생활이 자유롭다고
 느낍니까?

- ① 매우 자유롭다 ② 대체로 자유롭다
 ③ 부자유스러운 편이다
 (이유 —)

3. 당신이 기독교, 불교, 천주교 등 3대 종교외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
 교도(구치)소 당국은 당신의 종교생활도 3대 종교의 신자와 같은 수준으
 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
 ② 그만큼은 보장해주지 않지만 이해한다
 ③ 나의 종교생활에 전혀 영향이 없다
 ④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

4. 당신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면, 교도(구치)소 당국에 의한 종교활동의
 보장과 권장이 당신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까?

- ① 좋은 영향을 준다 ② 영향이 없다
 ③ 좋지 않은 영향은 준다
 (이유 —)

5. 종교방이 있었습니까?

- ① 그렇다 ② 아니다

6. 당신이 있던 교도(구치)소에는 수감자로서 한 종교의 신자들을 대표하는
 신자 대표가 있었습니까?

- ① 있었다 ② 없었다
 ③ 모른다

7. 만약에 신자 대표인 수감자가 있었다면 그는 자유롭게 다른 수감자들을
 만나고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?

- ① 그렇다 ② 그러지 못했다
 ③ 모른다

8. 그밖에 종교생활에 대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?

P. 금품의 취급

1. 영치금은 수감자가 한점의 의심을 품을 필요가 없는 분명한 방법으로 관리되었습니까?
① 그렇다
②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
③ 수감자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
2.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은 어떠하였습니까?
① 영치금 사용 카드로 물건 구입
② 면회대기실에 잔액 게시
③ 영치 담당 교도관에게 수시로 확인 가능
④ 접견소에 영치품 명세서 게시
⑤ 영치용지에 매일 기재, 본인 관리, 잔액 확인 가능
⑥ 기타 ()
3. 영치금으로 구입 가능한 구매품목의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충분
② 적당
③ 빈약
4. 당신이 출소할 때 돌려 받은 보관물은 잘 보관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잘 보관되어 있었다
② 그저 그렇다
③ 약간 관리 소홀
④ 매우 관리 소홀
5. 교도(구치)소 당국의 금품 취급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?

Q. 집필

1. 필기도구와 공책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?
① 그렇다
② 구입하는 분량에 제한이 있다
③ 아예 구입을 할 수가 없다
2. 영치금이 없는 사람에게 집필도구가 지급됩니까?
① 지급된다
② 지급되지만 쉽지 않다
③ 지급되지 않는다
④ 잘 모르겠다
3. 집필도구는 어떻게 소지합니까?
① 사방에 자신이 보관한다
② 교도관에 맡겼다가 필요할 때 받아서 쓴다
③ 기타
4. 집필은 어디서 합니까?
① 감방
② 집필실
③ 작업장 안
④ 기타
5. 집필 시간의 제한은 있는가?
① 있다 (1회 분 이내)
② 제한이 없다
6. 집필한 노트는 어떻게 보관됩니까?
① 자신이 보관한다
② 영치시킨다
7. 노트나 편지를 원하는 때에 외부에 반출할 수 있습니까?
① 예
② 아니오
8. 자신이 썼던 노트를 출소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?

① 있다

② 없다

9. 그밖에 집필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?

R. 이감·전방

1. 항소, 형 확정 외에 이감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?

① 있다

② 없다

2. 이감을 가본 경험이 있다면, 당신의 이감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?

3. 이감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었습니까?

① 그렇다

② 그렇지 않다

③ 전혀 그렇지 않다

4. 이감에 보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?

① 그렇다

② 아니다

5. 당신은 이감시 주소지로의 이감을 희망했습니까?

① 희망했다

② 희망은 했으나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지 않았다

③ 희망하지 않았다

6. 항소, 형 확정 외에 전방의 경험이 있습니까?

① 있다

② 없다

7. 전방을 가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?

8. 보복 이감이나 전방의 경우를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? 아래 자세한 사항을 적어주십시오.

교도(구치)소

(이유 —)

교도(구치)소

(이유—)

9. 그밖에 이감, 전방에 관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?

S. 작업 및 작업상여금

1. 당신은 작업을 하였습니다. 하셨다면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.

① 예 (작업종류 —)

② 아니오

2. 작업분류시 자신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?

① 모두 반영

② 절반 반영

③ 반영되지 않는다

3.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전시설 등의 조치가 충분했습니까?

① 충분하다

② 충분하지 못하다

4. 작업교육은 능력있는 사람에 의해 충분히 실시되었습니까?
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

5. 작업 환경은 만족스러웠습니까?
①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지 못하다
③ 잘 모르겠다

6. 산재발생시 교도소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?

7. 수용시설에서 직접 했거나 다른 재소자가 한 작업의 종류를 모두 열거해 주십시오.

8. 작업시간은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?
평일 — 시간 토요일 — 시간

9. 각종 직업훈련이 재범방지를 위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있다 ② 없다

10. 수용시설에서 배운 기술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
③ 전혀 그렇지 않다

11. 재소자들이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 모두 열거해 주십시오?

12. 당신은 출소직전 몇 급수였으며, 작업상여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?

13. 작업상여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적당하다 ② 박하다
③ 터무니없이 박하다 ④ 모르겠다

14. 그밖에 작업에 관하여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은?

T. 분류누진처우

1. 급수분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공정하다 ② 그저 그렇다
③ 공정하지 못하다 ④ 모르겠다

2. 누진처우 승습을 위하여 교도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춘 일이 있습니까?
① 있다 ② 없다
③ 모르겠다

3. 교도소 내에서 누진처우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
③ 모르겠다

* 이 설문지를 반송봉투에 넣고 봉한 후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*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